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8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김태선 · 윤종군 · 박 정

정준호 · 김주영 · 장철민

한민수 · 김남근 · 위성락

윤준병 · 이용우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「형법」 제266조(과실치상), 제267조(과실치사), 제268조(업무상과실·중과실 치사상)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,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.

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%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, 사고 후 유자녀를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책이 없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되는 비율도 55.4%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(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), 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도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, 배상명령 대상에 '일실수익'을 추가하는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손해"를 "손해, 일실수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, 제5조의11에 규정된 죄
-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때에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(이하 이 조에서 "미성년 자녀"라 한다)를 보호·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야한다.
- 1.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「범죄피해 자 보호법」 제3조제1항제6호의 중상해를 입었을 것
- 2. 범죄피해의 발생 당시 피해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 성년 자녀가 있을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배상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배상명령) ① 제1심 또는	제25조(배상명령) ①
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	
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	
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	
우,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	
피해자나 그 상속인(이하 "피	
해자"라 한다)의 신청에 의하	
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	
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(物	
的) 피해, 치료비 <u>손해</u> 및 위자	<u>손해, 일실</u>
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.	<u>수익</u>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
	관한 법률」 제5조의3, 제5조
	<u>의11에 규정된 죄</u>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
	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
	할 때에 「민법」 제4조에 따
	른 성년이 아닌 자녀(이하 이
	조에서 "미성년 자녀"라 한다)
	를 보호·양육하는 데 필요한

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피해자가 피고사건의 범죄행

 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「범

 죄피해자 보호법」 제3조제1

 항제6호의 중상해를 입었을

 건
- 2. 범죄피해의 발생 당시 피해

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

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것